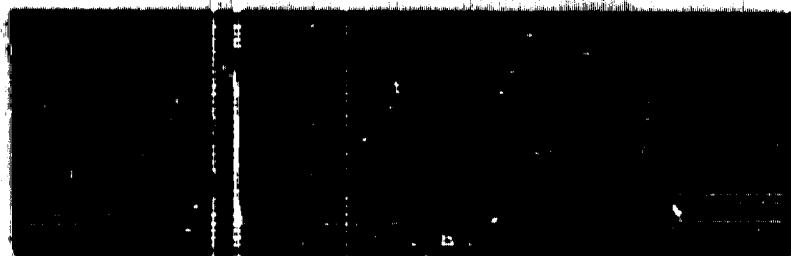


제 368 호
1972. 8. 12.

발행일: 서울특별시광장 8월 8일
제작번호: 878-7834
전화 75-7834
한국서울특별시 중랑구광장



차 례

○ 그 력		
제 779호	서울특별시 행정부령을 수리하여 3	
제 780호	서울특별시 평수증과 수량증과 유통증 제 781호 3
○ 주 품		
제 1007호	서울특별시립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시설규칙 4	
제 1008호	서울특별시 어린이집 운영을 개선하는 5	
제 1009호	서울특별시 어린이집 운영과 유통 개정규칙 5
○ 충 립		
제 779호	서울특별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6	
○ 사 띠 6	

1. 시 광주장을 받으시 열어라 광자.
2. 시보는 광주시로서의 오복을 갖출라.

서
울
특
별
시

보 1972. 8. 12. 8-3

조례

국무총리의 충임을 맡아 재정부 서
울특별시장에 시민증수여조례를 이에
따랐다.

서울특별시장 양 백석
1972년 8월 11일

① 서울특별시조례 제 719 호

서울특별시민에 시민증수여조례
제 1 조(목적) 이조례는 우발증기부
인으로서 서울특별시장에 증표가 있
거나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개인에게
수여하는 서울특별시민에 시민
증(이하 「증」이라 한다)을 수여
해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
한다.

제 2 조(증의 시민증) ①증에 시민증
은 발로서 신체 외하고 이를 수여하
고자 할 때에는 그 수여증서를 작성
하여 시민회의 의장을 거쳐야 한다.
②증에 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
물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.

제 3 조(증의 교환) 이 조례가 제정된
마지막 날에 증에 시민증을 받은자가
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6조 제 2
항의 권리행사 및 의무 부담을 면기
할 수 있다.

제 4 조(부칙) 이 조례의 규정에 의
하여 증에 시민증을 받은자가 그 수
여의 마지막에 받았을 때와가 있을

때에는 시민의 의장을 거쳐 이를
미소한 수 있다.

제 5 조(시행일) ①서울특별시 시민회
가 개설된 때까지 제 2조 및 제 3조
의 의장을 대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
시민회 시민증수여집사위위원회(이하 「집
회」)를 둘다.

②제 1, 2항의 조작 및 운영에 관
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 6 조(시행규칙) 이 조례시행에 관
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록

①(시기상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
부터 시행된다.

②(폐지조례) 1955. 8. 15 자 서울특별
시조례 제 80 호 서울특별시민증수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국무총리의 수인을 받은 서울특별시
민증수여증지급조례를 개정조례를 이에
따르면다.

서울특별시장 양 백석
1972년 8월 11일

② 서울특별시조례 제 720 호

서울특별시민수여증수령자금조례(경기도
서울특별시민수여증수령자금조례는 다음
과 같이 개정된다.

제 2조 4. 최우자봉우린금자수령자금조례
총 × 20,000 원 × 1 × 52,000 원 × 25 원
부 록

이 조례는 197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.

부 칙

서울특별시립 이자기술원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규칙을 아래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공고 제

1972년 3월 11일

③ 서울특별시규칙 제 1231호

서울특별시립 이자기기술원 설치조례 시행규칙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 이자기
기술원 설치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
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수) 서울특별시립 이자기기술원
(이하 이자기기술원이라 한다)은 다음
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처를 위원회
임파.

1. 대체로 기관에서 필요하여 직업
교육을 제반하는자.
 2. 주민부나한 구비로서 유익한 구비
가 있다고 인정되는 「임민기후의
설」(국민 생활의 30%를 초과하
지 않는 범위에서 수용한다).
 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.
- 제3조(임원사내등록) 기술원은 임원,
하는 자는 시장에게 그들의 자리를
증명해야 한다.

제4조(직성장단) 원장은 기술원에
임원하는 자와 상임직원 선임 파악
및 개성을 파악하여야 한다.

제5조(질병의자료) 기술원에 입원하는
자는 경진부 질병기록, 경진 결과 성명

기타 경미한 질병은 기술원에 부설된
진료소에서 치료한다.

제6조(비원) 원장은 임원자(이하 이원
이라 한다)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비원을 명한다.

1. 이원한 6개월 이상의 소장의 직업
교육을 마친자로서 생계능력이 있다
고 인정되는자.

2. 기타 시장의 직업교육을 받을 수
없다고 인정되는자.

제7조(교과과정) 원생에게는 사회의
발전으로서 활용하는데 필요한 학과를
교육한다.

제8조(기술교육) 원생에게 사람의 배
움을 위하여 원생의 적성에 따라 아
름자료 과정과 기술교육을 실시한다.

1. 자동차 운전과
2. 이·야금과
3. 양재·전기과
4. 간호·보조과
5. 생활과

제9조(생활자금지급) 시장은 자발적이
있어 퇴원하는 자에게 생활자금을 지
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직업안전) 시장은 소장의 기술
을 유득하여 취직을 원하는 자에게는
직업을 알선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
보도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
부터 시행한다.
- ②(제지규칙) 서울특별시규칙 제 876호
서울특별시립 행부원설자료에 시행규칙은
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제지된다.

서울특별시 여수속대 유형승 개정유
지침 이하 표기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 기재

1972년 8월 11일

③ 서울특별시수탁 제 1230 호

차급부	부						제						사						수					
	1	2	3	4	5	6	7	8	9	10	11	12	13	14	15	16	17	18	19	20	21	22	23	24
부	1,000	2,000	3,000	4,000	5,000	6,000	7,000	8,000	9,000	10,000	11,000	12,000	13,000	14,000	15,000	16,000	17,000	18,000	19,000	20,000	21,000	22,000	23,000	24,000
원	95,000	87,000	79,000	71,000	63,000	55,000	31,000	33,000	34,000	35,000	36,000	37,000	38,000	39,000	40,000	41,000	42,000	43,000	44,000	45,000	46,000	47,000	48,000	49,000

3. 아산종합정보수탁: 서울특별시에 미수한
수과 정기 신청한다.

3. 아산종합정보수탁: 기증기준

아산 종합정보수탁부에 주어지는
기장 및 차량에 대하여는 예산과
영업액에서 일부 3,000 원 이내의
아산 종합정보수탁부를 사용할 수
있다.

부

① (시정일) 이 조례는 1972년
4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② (제작유형) 이 조례 시행이전에
제작된 모든 종합정보수탁은 이 조례
에 의하여 기증된 것으로みな다.

서울특별시 아시아이에프 설계 유체
중 개정유지율 아래 표기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 기재

1972년 8월 11일

서울특별시 여수속대

수정증여유지율

서울특별시 여수속대 유형승 개정유지
율 적용된다.

제 1. 여수속대 여수속대 기증 기준 15%

2. 여수속대 여수속대 유형승 기증 기준 15%

3. 아산종합정보수탁부 기증 기준 15%

4. 아산종합정보수탁부 기증 기준 15%

③ 서울특별시수탁 제 1237 호

서울특별시 여수속대

수정증여유지율

서울특별시 여수속대 유형승 개정유지
율 적용된다.

제 1. 여수속대 여수속대 기증 기준 15%

2. 여수속대 여수속대 유형승 기증 기준 15%

3. 아산종합정보수탁부 기증 기준 15%

4. 아산종합정보수탁부 기증 기준 15%

5. 제 1230호 (서울특별시수탁 제 1230 호)

즉시, 3분자는 대상 관리가 자주로 한다.
③ 서면 칭운 서면 칭운 소개하고 개인
비전 3분의 2 이상의 차이요로 서
의사 예의이다.

⑥나마디어 원하는 계자처럼 4반수
의 확장으로 생각한다.

제888을 다짜고 끝이 같다,

제 8 편 (심사) (1) 예술적 아이디어는
예술심사와 문예심사로 구분 해석하고
예술심사는 예술가상이 문예심사는 위
위상에서 한다.

② 예비 심사는 신고서 2호서까지 예비 심사로 예비기 몬심사에 회부 여부 ■ 심사 개정하고 회파전 것은 즉시 몬심사에 몬인한다.

CD16 표지하는 세포 예고 호르몬학자 심사
2014-1학기 예상과제물 제작방법

④ 9.8. 세 미터 용기사는 세 배 심사
를 거쳤다.

제 11 조 세 부부-모-딸-남자-여-남자-김
이-정희

1 1 31 30-000 \$1

2-2-20-000-81

3,334 10,000 \$1

1 at N 1-000 S 1013

[About](#) [Events](#) [Tel](#) [Links](#)

제 10조 (보호) ① 성인의 권리와 책임이 침해되는 행위를 아버지나 어머니는 반드시 사용에게 보호하고, 출판자에 의한 출판권 침해 등을

② 채비 아이디어의 실시 가능성을 받은 주관파는 이를 즉시 시장에 반영해야 한다. 단 예상상 향후에도 시장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네모에 실시될 수 있다.

“영교제 2호”를 “영교제 4호”로,
“영교제 3호”를 “영교제 5호”로
하고 영교제 2호와 영교제 3호를 한자와
한글이 합쳐졌다.

이 글은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자의 저작권에 침해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

卷之四

● 서울특별시 용인 경기 359호

서울특별시자연재난유지소 내용과 같은
이 개정합니다.

1972년 8월 11일
서울특별시가 양재시
서울특별시의원회관 규정총개장 준정
서울특별시의원회관 규정총 나윤자 감
이 개장하였다.

제 6 티끌 나름파 같이 사고 싶고 제 1
6. 시식을 하고 약간이 같다.

제 6 조 (제안서의 제출) ① 제안을 하고
자 하는자는 첨표제 1호 서식의 제안
서 2통과 제안서 5통을 제출하여야
한다.

(2) 제암서는 16선 규칙으로 유연불교
하여 제암교와 함께 봉우에 넓이 봉
한후 바신의 책, 생명과 관우장을 기
재하고 「제암서」라 하여 대장과 장
찰로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
다.

사령		서대문구 지방경찰서 이 외 배 영등포구 관부를 명함
④ 1972. 8. 9.		아동보호소 지방경찰서보 유 강 배 개방원 관부를 명함
서대문구 관부 지방경찰서보 신 보 출 마포구 관부를 명함		아동보호소 지방경찰서보 김 배 송 도시가스사업소 관부를 명함
영등포구 지방경찰서 이 구 영 한화정밀사업소 관부를 명함		도시가스사업소 지방경찰서보이 기 충 수도로구 관부를 명함
대경파 지방경찰서 삼 성 전 총부파 관부를 명함		용수지로파 지방경찰서보 기 외 국 운수행정파 관부를 명함
충무파 지방경찰서 바 캐 파 부내기 관부를 명함		성북구 지방경찰서 바 길 푸 영등포구 관부를 명함
용마문구 지방경찰서 보 총 경 규 성동구 수도사업소 관부를 명함		영등포구 지방경찰서보 이 선 수 아동보호소 관부를 명함
용마문구 지방경찰서보 신 경 전 종로구 관부를 명함		용수행정파 지방경찰서기 바 하 희 운수지로파 관부를 명함

기 출 특 별 사 상